

나. 시·군 관내전보

- 1) 관련 규정: 시·군간 전보 참조
 - 가) 인사교류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3)
 - 나) 전직 등의 제한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1조,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)
 - 다) 전보계획(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18조)
 - 라) 전보구역 등(동규정 제19조)
 - 마) 정기전보(동규정 제20조)
 - 바) 전직·전보의 제한(동규정 제22조)
 - 사) 비정기전보(동규정 제21조)
 - 아) 전보의 특례(동규정 제23조)
 - 자) 인사발령통지서 등(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18조)
 - 차) 인사발령 통지(동규칙 제22조)
 - 카)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
 - (1) 전보계획 및 전보시기(제6조)
 - (2)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작성(제7조)
 - (3) 전보희망자순위명부의 유효기간(제8조)
 - (4) 인사구역(제9조)
 - (5) 근무기간(제10조)
 - (6) 정기전보(제11조)
 - (7) 전보의 유예(제11조의2)
 - (8) 비정기전보(제12조)
 - 타) 권한위임
 - (1) 위임(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 제6조)
 - (2) 관내전보(동기준 16조)
 - (3)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(「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」 제6조)

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.

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
 - 파) 경기도00교육지원청 인사관리세부원칙(교육지원청 중등교원): 생략